가뭄정보통계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10032
승인일자		2019년 12월 18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보고대상	지역	■ 167개 시군구
	범위	■ 가뭄 관리 특성을 반영한 전국 167개 시·군 ※ 가뭄 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·경보 판단기준(광역시 포함) ※ 시(77), 군(77), 특별·광역시(7), 광역시 아래 군(5), 특별자치시(1)
	보고단위	■ 시군구
	보고대상 규모	■ 우리나라 지역에 1월 1일~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한 가뭄 현황
보고항목		■ 가뭄발생, 가뭄피해, 가뭄대응, 비상용수 지원, 긴급용수원 개발, 영농급수 이후 사전용수 확보, 장비 및 인력지원, 복구(가뭄대책비 지원, 농작물재해보험 지급)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집계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 기준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월 ~ 12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2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국가가뭄정보통계집)
보고체계		■ 행정집계(지방자치단체) → 정부부처(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기상청) 및 유관기관(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수자원공사) 자료 조사 및 수집 → 자료검토 · 수정 및 통계 산출(국립재난안전연구원)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■ 본 통계는 해당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한 가뭄 현황과 그에 따른 피해, 대응, 복구 등 가뭄 관리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하였으며, 이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별도로 그 기간을 표시하였음 ■ 소수점을 포함한 세부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함에 따라 세부 항목의 수치 합과 합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주요 용어해설		■ 가뭄: 가용 수자원(댐, 저수지, 하천수, 지하수 등)의 부족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일상 생활 및 농업·산업·상업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거나 피해를 발생시킬 정도 [*] 의 강수량 부족 현상 * 용수 수요·공급량 네크워크, 취수원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
		- 기상가뭄: 특정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지속 되는 현상으로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표준강수지수(SPI6)가 -1.0 이하인 경우
		※ 단,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함
		- 농업용수,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: 농업,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 정도가 용수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준'에 도달이 예상되거나 용수공급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
		*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(한국농어촌공사), 생활 및 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(한국수자원공사)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
		- 가뭄 피해: 가뭄으로 인한 가용 수자원 부족으로 용수 이용 제한 혹은 제약이 발생하여 일상생활 및 농업·산업·상업 활동에 피해'를 초래한 경우
		* 제한급수·단수에 따른 일상생활 피해, 농작물 생산량 감소, 산업분야 생산량 감소, 숙박·목욕탕·식당 등 영업 피해
주요 연혁		■ (2019년) 가뭄정보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